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건설업체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재무구조가 양호한 건설업체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난을 완화하고 유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계획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해당 주택건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8년 11월 26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원세훈
장관
(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1136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비고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은행이 조달한 금전 중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경우에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1월 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은행의 외화 예금은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은행의 원화 예금 및 다른 금융업권의 외화표시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은행의 외화 예금도 예금자보호의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1명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